주제 01

교육기관에서의 저작권 이해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 표준연수안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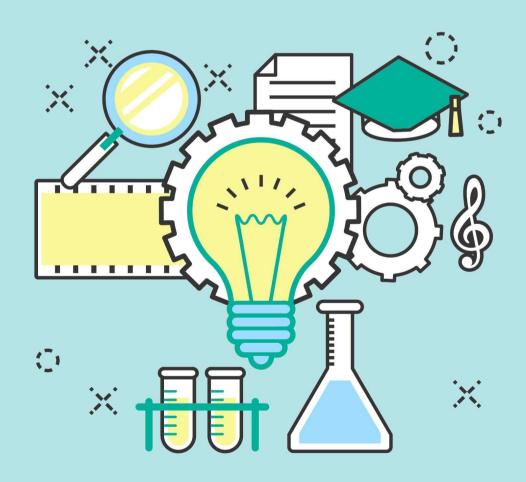
주제 01

교육기관에서의 저작권 이해

1. 교육기관과 저작권	5
2.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 이해	6
가. 저작권	6
나. 저작물	8
다. 저작자(저작권법 제8조)	10
3. 저작재산권의 제한	10
가.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11
나.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14
다.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14
라.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14
마. 제32조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15
바.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15

주제 01

교육기관에서의 저작권 이해



「교육기관에서의 저작권 이해 」 과정 개요





개발 목적 및 필요성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육기관에 발생한 원격수업이라는 수업환경의 변화는 교사들로 하 여금 저작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식하게 하였다. 기존 대면수업에서와는 달리 온라인 환경에서 이 루어지는 원격수업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을 여러 형태로 이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발생하 는 교사들의 고충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교육기관 대상 저작물 이용 실태 조사(202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결과를 보면. 초등교사 95%. 중등교사 94%, 고등교사 93%가 최근 5년간 1회 이상 저작권 교육을 이수했다고 응답하였으나, 응 답 교사의 44%만이 학교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 방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 즉, 교사들이 저작권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육현장에서의 저작 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기관 저작권 현안 중심 의 맞춤형 저작권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대효과

저작권법이 지향하는 목적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에 있다. 이를 위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을 마련해두었고, 학교 현장에서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저작물 역시 이러한 제한 규정에 의거하여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교육과정에서는 저 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8조(공표된 저 작물의 인용),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라는 공연·방송),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의 제한 조항을 근거로 하여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학교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교원들의 저작권 역량 향상을 통 해 교사 스스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문제 상황을 판단해 낼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고, 나아가 안전 한 저작물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최종적으로는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다.



학습내용

가. 학습주제 : 교육기관에서의 저작권 이해

나. 학습목표 : 학교교육을 목적으로 한 저작권법·제도에 대한 이해

다. 내용요소

내용 요소	세부 내용	비고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 교육기관 대상 저작물 이용 실태 조사 결과 • 교육기관 대상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 이해	 저작권 저작물 저작자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재산권 제한의 의미 학교 교육목적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32조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01 교육기관에서의 저작권 이해





교육기관과 저작권

과거 서책(예: 교과서) 위주의 수업이 중심이었던 교육환경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사들이 수업을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ICT 기반의 교육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종류의 수준 높은 저작물을 누구나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환경에서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필수적이다. 특히,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육기관에 발생한 원격수업이라는 수업환경의 변화는 교사들로 하여금 저작권에 대해다시 한 번 인식하게 하였다. 기존 대면수업에서와는 달리 온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원격수업에서는 여러 종류의 저작물을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교사들의 고충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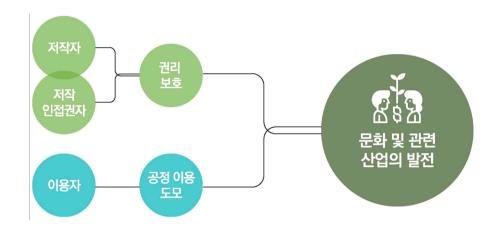
교육기관 대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202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중등 교사의 94%가 최근 5년 내 저작권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였으나, 응답 교사의 44%만이학교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 방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 또 원격수업을 위한 보호조치에 대해모든 학교급의 교사들이 낮은 비율의 이해도를 보였고, 5년 미만 경력의 저경력 교사들의 저작권이해도가 가장 낮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학교급에 차이 없이 36~37%의 교사가 저작권 고충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어 저작권에 대한 교육기관의 피로도를 가늠할 수 있다. 물론 현재도 교사들이 교육, 행정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저작권 연수를 이수하고 있지만 그들의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더욱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쟁이 증가할수록 교사들은 수업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저작권법이 지향하는 목적은 저작물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저작권법상 학교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 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없이 저작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 무작정 저작물을 이용 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소극적인 저작물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교사들이 모든 저작권법 조항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저작권법·제도 아래 학교 교육을 목적으로 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저작권 교육에서는 단편적인 저작권법·제도에 대한 안내가 아닌, 저작권 현안 등의 내용에 비추어 실제 교육현장에 적응할 수있는 학교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 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 이해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저작권법 제1조). 즉.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라는 단순 목적을 넘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저작권을 이용하고, 저작물 보호 범위를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이용자의 공정 이용 권리를 확보하 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저작권법의 이해를 통해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저작권

저작권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창작한 결괴물(저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저작자)에게 주어 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배타적, 독립적으로 이용할 권리이면서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용할 것을 금지할 권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 람은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사전 동의(허락)를 받아야 한다. 이용 후 동의(허락)를 받겠다고 생각하고 먼저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이미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 과 동시에 발생하며, '무방식주의'라고 하여 저작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한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 구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은 저작자가 가지는 인격적인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자 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명예나 성망 등 인격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여된 권리이다. 이 권리는 저작자의 창작 의도에 반하여 저작물이 이용되는 것으로부터 저작자를 보호한다. 저작인 격권은 저작자의 일신(一身)에 전속(轉屬)한다(저작권법 제14조). 즉,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고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한다. 저작인격권을 구성하는 개별 권리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표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의 여부, 공표를 할 경우 언제 어떠한 형태나 방
(저작권법 제11조)	법으로 공표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 또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공표를 금지할 권리
성명표시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표할 때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거나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을 권리,
(저작권법 제12조)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성명을 다르게 표시하거나 빠뜨리고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
동일성유지권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이용자가 저작물의 내용·형식
(저작권법 제13조)	및 제호를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

2)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한 권리이다.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을 소유하기 때문에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이용료 를 청구할 수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은 제 3자에게 양도나 이전 이 가능하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재산권의 소유자에게 사전 동의(허락)를 받아야 한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후 70년간 존속한다(저작권법 제39조).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개별 권리들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제권 (저작권법 제16조)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권리		
공연권 (저작권법 제17조)	저작권자가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 즉 유·무선을 통하여 저작물을 송신할 권리로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으로 구성		
	권리	개념	
공중송신권 (저작권법 제18조)	방송권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자신의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 (예) 지상파 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1——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이용에 제공할 권리, 또 전송에 의해 제공된 저작물이 공중의 구성원에게 송신되는 것	
		(예) 인터넷 사이트에 저작물을 올리거나, 인터넷사이트의 저작물을 이용자 가 클릭하였을 때 자동으로 송신되는 것 또는 학교 현장의 원격수업 등	
	디지털음성송신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디지털 방식의 음을 송신할 권리로 음성 외의 텍스트, 영상, 이미지 등의 디지털 송신은 디지털음성송신권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중송신권의 적용을 받음(예)실시간 음악 웹캐스팅 등	

전시권 (저작권법 제19조)	저작권자가 자신의 원작품이나 복제품을 진열하여 공중에게 직접 보여줄 권리
배포권 (저작권법 제20조)	저작권자가 자신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라고 공중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권리
대여권 (저작권법 제21조)	저작권자가 자신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돌려받는 것을 조건으로 빌려줄 권리로 상업용 음반과 상업용 컴퓨터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하는 것에 대해서만 인정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법 제22조)	저작권자가 자신의 원작품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할 권리

🥸 나. 저작물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모든 작품이 저작물로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첫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인간 이외의 동물이나 자연의 표현 물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며, 같은 맥락에서 AI가 창작한 작품 역시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한다. 둘째,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창작성은 높은 수준의 창작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전문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작품도 저작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건 또는 자연현상이나 역사적 사실의 기술은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 전화번호부처럼 방대한 자료의 경우에도. 이를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창작성 도 인정되기 어렵다. 즉.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창작에 의한 표현이 필요하다. 셋째. 저작물 은 밖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표현만 보호하고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 의 어떤 사상이나 감정이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저작권법에서는 보 호받는 저작물 9가지(저작권법 제4조)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5가지(저작권법 제7조)를 규정하고 있다.

1) 보호받는 저작물(저작권법 제4조)

종류	내용
어문저작물	말(구술)과 글(문자)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 (예) 소설, 시, 수필, 논문, 강연, 연설, 낭송 등
음악저작물	소리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 (예) 가요, 국악, 교향곡, 오페라, 민요 등
연극저작물	사람의 말과 몸짓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 (예) 연극대본, 무용, 무언극 등
미술저작물	시각적 미를 형상이나 색채에 의해서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저작물 (예)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작품 등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그 설계도서
사진저작물	인물이나 풍경 그 밖의 형상을 사진기 등의 기계적 장비에 의해 필름이나 인화지 또는 직물 등에 평면적으로 표현한 저작물

종류	내용
영상저작물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해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연속적 영상으로 표현된 저작물 (예)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TV광고 등
도형저작물	어떤 형태나 모양을 표현하는 저작물 (예) 지도, 도면, 도표, 설계도, 통계그래프, 인체모형, 동물모형 등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예) 원시코드(source code), 목적코드(object code) 등

2)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창작성이 있지만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호기간이 끝났거나 저작권자가 권 리를 포기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다.

가)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저작권법 제7조)

종류	내용
법령	 헌법, 법률, 조약, 대통령령, 부령, 조례 규칙 및 국제 조약, 지침 등의 각종 규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에게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발표하는 각종 공문서 등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법원이 내리는 판결, 결정, 명령과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유사한 절차를 통한 의결 및 결정 등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육하원칙 등에 입각하여 짧고 간결하게 작성된 재판상황기사, 기상정보, 인사발령기사, 부고기사 등

나) 보호기간 만료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첫째, 저작권은 무한정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저작자 사후 70년) 동안만 보호된다. 따라 서 이 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로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다. 둘째, 저작권자가 공중을 상대로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저작물, 즉 저작재산권을 포기한 저작물 또한 저작권으로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다. 셋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법인이나 단체 등이 저작재산권을 처분하지 않은 채 해산하여 저작재산권이 소멸된 저작물도 더 이상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종류	내용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	저작권 보호기간(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저작물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을 포기한 저작물	저작권자가 공중을 상대로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저작물
저작재산권이 소멸된 저작물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법인이나 단체 등이 저작재산권을 처분하지 않은 채 해산하는 경우

다. 저작자 (저작권법 제8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저작자는 저작권을 가진 저작권자가 된다. 이를 창작자 원칙이라 한다. 소설가, 시인, 작곡자, 작사가, 안무가, 화가, 조각가, 건축설계사, 사진 작가. 영화감독. 컴퓨터프로그래머 등이 저작자에 해당한다.

창작을 한 사람이 저작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창작자가 아니라 그를 고용하고 있 는 개인이나 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저작자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저작권법 제9조)'이라하며, 법인 등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법인 등이 기획한 저작물이어야 한다. 업무 시간 중 작성한 것이더라도 법인 등이 기획한 저작물이 아니면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다. 둘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창작한 저작물이어야 한다. 셋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거나 공표될 것이 예정되어야 한다. 넷째.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저작자를 근로자로 한다는 약정이나 특약이 없어야 한다. 학교의 기획 하에 교사가 출제하여 학교 이름으로 공표된 시험문제가 업무상 저작물의 예이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저작권법 제2관)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를 통하여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 고 더 나은 저작물의 창작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호가 지나치게 되면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을 제약하게 되어 오히려 국민의 문화생활이 위축되고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 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에 대한 보호의 범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균형을 조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 규정 범위 안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저작재산권 제한은 첫째.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 (저작권법 제23조 제25조 등). 둘째. 다른 기본권 과의 조화를 위하여 (저작권법 제26조, 제27조 등). 셋째. 소수자의 배려를 위하여 (저작권법 제33조, 제33조의 2 등). 마지막으로 거래비용으로 인하여 저작권의 효과적인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저작권법 제29조, 제30조 등하다. 여기에서는 저작재산권 제한 내용 중 학교교육과 관련이 있는 6가지 조항에 대하 여 살펴보고자 한다.

화가.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학교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저작권법 제25조에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는 수업(지원)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 분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제25조 제4항),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도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 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해당 조항에 따라 이용되는 저작물은 상 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그 출처를 명시해야한다.

1) 교육기관의 범위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등
-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등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 한정)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기관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해 설치된 직업훈련기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특수교육기관
-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공무원교육원 등 공무원교육훈련기관

2) 수업의 개념

수업이란 교사가 정해진 과정을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학생에게 지식이나 기능을 가르치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의 수업은 시간과 장소가 반드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 다. 저작권법에서의 수업은 교실 내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책임자의 감독 하에 교사 및 이에 준하는 자에 의해 수행되는 교실 밖 수업도 포함된다. 물론 오프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의 수업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가) 유아교육법상의 교육과정 및 원장의 지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
- 나)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육과정(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및 학교장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보충수 업, 학교 스포츠클럽활동, 범교과 학습활동, 계기교육, 방학 중 프로그램 등)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3) 수업지원기관의 범위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수업지원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수업지원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으로 구성원 이 공무원법상 공무원이어야 한다.
-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청 소속 기관 : 교육지원청, 교육정보원, 시도교육연수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원, 유아체험교육원 등
- 국가 소속 교육지원기관 :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등

4) 수업지원 목적의 범위

수업지원은 수업지원기관이 교원이나 학생을 위해 강의지원활동이나 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업지원목적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가) 교육지원기관에서 시행하며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지원
- 나) 교원(수업을 실제 담당하는 교사, 강사 등) 또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수업지원

5) 수업(지원) 목적상 허용되는 저작물 이용요건

구분	이용 조건	
이용 대상 저작물	- 공표된 저작물	
이용 주체	-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수업을 받는 학생에 한정 (학부모, 일반인 등은 제외되나 일회적인 공개수업 등에서는 예외)	
이용 방법	- 복제, 배포, 공연, 전송, 전시, 공중송신에 의한 이용	
이용 시간	 교원이 수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 한정 수업 전후, 예습과 복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온라인 수업이나 사이버학습의 경우에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 	
이용 장소	- 교실에 한정되지 않으며 장소적 제한은 없음	
일부분 판단기준	-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 전부 이용이 불가피하거나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 이용이 가능	

(교육목적저작물이용 가이드라인)

6) 수업(지원) 목적상 허용되는 저작물 이용 분량

구분	이용 분량 기준	허용되는 행위
어문 저작물	10% 이내	 학술지의 논문 한 편 또는 대학교재, 학술교재, 전문 서적 등의 1장 (1단원) 전체를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 단행본의 일부를 복제하는 것 정기간행물에 수록된 논문을 복제하는 것 단행본이나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차트, 그래프, 도표 등을 복제하는 것 학술서적이나 대학교재와 같은 어문저작물의 내용 일부를 요약하여 교 안을 만드는 것
음악 저작물	20% 이내 (최대5분)	- 음악저작물의 발췌부분을 여러 부 복제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것 - 음악저작물이 연주되어 음원으로 제작된 경우 음원을 재생하여 공연하는 것
영상 저작물	20% 이내 (최대15분)	 영상저작물을 편집하여 수업자료로 가공하는 것 PT에 삽입하여 활용하는 것 영화의 일정 부분을 시청하여 영어 학습 등을 하는 것
이미지 저작물 (사진·그림 짧은 시 등)	전부	-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저작물이용지침서, 194p)

7) 수업(지원) 목적의 저작물 이용 시 허용되지 않는 이용 (이용허락 대상요건)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수업 또는 수업지원으로 이용되는 저작물은 일부분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한다. 따라서 그 범위를 넘어서는 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 요하다.

- 가) 저작물의 일부를 시중에서 판매되는 형태와 유사하게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파일로 제공하여 구매를 대체할 수 있는 이용
- 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집. 참고서(워크북 등 포함)의 일부를 복제하여 배포하거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이용
- 다) 교원에 의해 매 학기 마다 같은 자료를 반복적으로 복제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이용
- 라) 도서, 간행물, 영상 저작물의 일부분을 순차적으로 복제함으로써 누적되어 결국 전체를 복제하게 되는 이용
- 마)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 1인당 1부, 수업을 받는 학생당 1부를 초과하는 복제
- 바) 판매되는 음원·영상 저작물을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배포하거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이용

8) 온라인 환경에서 수업(지원) 목적의 저작물 이용 시 의무 사항

학교,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이 그 수업 및 지원 목적상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 다음과 같 은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가) 접근제한조치 :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 나) 복제방지조치 :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 다)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 표시
 - 예 본 수업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학교수업을 목적으로 이용되었으므로, 본 수업자료를 외부에 공개 게시 등 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나.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공익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된 저작물이므로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배제하고 납세자인 일반국민들의 자유로운 이 용을 보장한다.

🤏 다.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용이란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넣어 설명하는 데 쓰는 것을 의미한다. 즉.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저작물이 존재해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신의 저작물이 없는 상 태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발췌하여 이용하는 것은 인용으로 볼 수 없다.

🚇 라.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1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 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교내 체육대회, 축제 등에서 상업용 음반을 틀어주는 것, 점심시간에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교실에 상업용 음반을 틀어주는 것과 같은 행위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

마. 제32조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저작권법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에서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 을 복제·배포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다. 이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출처명시의 의무가 제외된다.

바.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서는 저작물의 이용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문화체육관광부 (2016),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교육지원기관을 위한 저작물 이용 활용서(저작물 이용 지침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 학교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종합 해설서(초중등학교 저작권) 임원선 (2018).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제5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9), 교육기관 전담 저작권 전문가 양성 연수(기초과정) 교재

